##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19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이병진·윤후덕·김영호

소병훈 · 김현정 · 임미애

이원택 • 권향엽 • 주철현

박상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상금 지급,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만 유족으로 인정하여 손자녀가 조기 사망하거나 독립유공자의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 유족에 대해 충분한 예우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보상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보상금액이 충분치 예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 됨.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의 지급 수준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충분 한 예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 법률 제 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를 "제1항제3호·4호의 손자녀 및 증손자녀의"로, "손자녀로"를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4호의"를 "제1항제5호의"로, "제3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한다.

4. 증손자녀(曾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손자녀 및 증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 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증손자녀로 본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손자녀일"을 "증손자녀일"로, "손자녀에게"를 "증손자녀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손자녀"를 "증손자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손자녀"를 "증손자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녀까지"를 "자녀 및 손자녀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녀가"를 "자녀 또는 손자녀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가계소비지출액"을 "가계소비지출액과 물가상 승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물가상승률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또는 손자녀"를 ",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및 손자녀"를 ", 손자녀 및 증손자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전단 중 "손자녀가"를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가"로, "손자녀의"를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의"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및 손자녀"를 ", 손자녀 및 증손자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 또는 가족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	
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손자녀(孫子女). <u>다만, 독립</u>	3 <단서 삭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	제>
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	
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	
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	
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u>&lt;신 설&gt;</u>	4. 증손자녀(曾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손자녀 및 증손자녀까지 사망
	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
	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u> 증손자녀로 본다.</u>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	④ 제1항제3호・4호의 손자녀
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	<u>및 증손자녀의</u>
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있	

양한 자 1명만을 <u>손자녀로</u>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u>손자</u>년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u>손자녀에게</u> 이전되지 아니한다.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

손자녀 또는 증손자녀로
⑤ <u>제1항제5호의</u>
<u>제</u>
<u> 4호까지의</u>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u>증손</u>
<u> 자녀일</u>
<u>중</u>
<u>손자녀에게</u>
1

- 망한 독립유공자의 <u>손자녀</u> 1 명
-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 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u>손자녀</u>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u>자녀</u> <u>까지</u> 모두 사망한 경우
  -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u>자녀가</u>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③ ~ ⑤ (생 략)
-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	142	돈의	5()	생횔	안?	정을	우	한	기	원
	금의	븨	지급	1	등)	1	국	가녕	1훈	부
	장된	간은	. 5	투립	유극	공자	의	자١	크	<u>또</u>
	는	손	자니	<u>쿠</u>	중	제1	2조	:에	따	른
	보신	상금	을	받	·ス]	0}1	니히	는	사	람
	에게	ᆌ는	- フ	[준	중	위소	:득	등	생	활
	수	주을		고리	부하	여	생	활인	난정	을
	위형	한 :	지원	급.	을	지급	-할	수	있	다.

② (생략)

제15조(교육지원) ① (생 략)

- 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독립유공자의 자녀 <u>및 손자</u> 녀
- ③ (생 략)

제16조(취업지원) ① (생 략)

-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u>손자녀가</u> 질병·장애 또는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금의 지급 등) ①
<u>,</u> 손자
<u>녀 또는 증손자녀</u>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교육지원) ① (현행과 같
흥) ②
<b>2</b>
1. (현행과 같음)
2, 손자녀
<u>및 증손자녀</u>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취업지원) ① (현행과 같
<u></u> 이 교
②
1. • 2. (현행과 같음)
3
<u>손자녀 또는 증손자녀가</u>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u>손자녀의</u> 자녀 1명. 이 경 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 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④ (생 략)

제20조(양육지원)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 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 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 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 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 •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 · 대학 또는 이 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 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계속 지 원할 수 있다.

<u>손자녀 또</u> 는 증손자녀의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양육지원)
<u>,</u> 손자녀 및 증손자 <u>녀</u>